

1. 제안이유

해외 각국의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한국어교육, 한국유학 등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육원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,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하여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외동포 평생교육 외 현지 국가(지역)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유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원 설치 기준 정비(안 제12조)
- 나. 교육원의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와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배치(파견)를 위한 근거 마련(안 제12조의2)
- 다. 교육원의 원장 직위 전체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, 부원장 직위 신설 지역을 확대하며,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원 파견 근거 마련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추진예정
3) 행정규제 : 협의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)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.

1.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중인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및 평생교육 수요
2.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외국인 한국어교육 수요
3.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한국유학 수요
4.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교류·협력 수요
5. 법 제29조제6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밖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교육원은 사무실 1실 이상·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(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유학생유치센터)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원 내에 유학생유치센터를 둘 수 있다.

②원장은 유학생유치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교육부장관은 유학생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
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4. 「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」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
5. 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」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

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에 파견된 직원(이하 “파견직원”이라 한다)은 복무에 관하여 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⑥원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”을 “교육공무원,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호에 따라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로스앤젤레스·파리·타슈켄트·알마티 및 하노이”를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

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로스앤젤레스
2. 파리
3. 타슈켄트
4. 알마티
5. 하노이
6. 호치민
7. 방콕
8. 오사카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재외국민과 한민족(韓民族)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: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. 시설기준 : 사무실 1실 이상·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(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)	제12조(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)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. 1.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및 평생교육 수요 2.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외국인 한국어교육 수요 3.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한국 유학 수요 4.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교류·협력 수요 5. 법 제29조제6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밖의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육원은 사무실 1실 이상·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(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 제12조의2(유학생유치센터) ①교
<신 설>	

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원 내에 유학생유치센터를 둘 수 있다.

②원장은 유학생유치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교육부장관은 유학생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 또는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
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
4. 「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」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
5. 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」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

제14조(교육원의 원장·교원·직원의 임용 등) ①교육원의 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. 1.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 <u>이 있는 자</u> 2. <u>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</u>	<u>협의회</u>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.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에 파견된 직원(이하 “파견직원”이라 한다)은 복무에 관하여 원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⑥원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 제14조(교육원의 원장·교원·직원의 임용 등) ①----- ----- <u>교육공무원</u>,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-----. <삭 제> <삭 제>		<u>자</u> 3. 장학사·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,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. <신 설> ③ <u>로스앤젤레스·파리·타슈켄트·알마티 및 하노이</u>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·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.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<삭 제> <삭 제>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호에 따라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로스앤젤레스 2. 파리 3. 타슈켄트 4. 알마티 5. 하노이 6. 호치민
--	--	--	---	---

<u><신 설></u>	<u>7. 방콕</u>
<u><신 설></u>	<u>8. 오사카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3-6797, 6790